

●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-67호

유전자변형식품 승인 공고

「식품위생법」 제18조 및 「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면화 GHB811×T304-40×GHB119×COT102×MON88701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,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02월 09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

1. 승인 품목

대상품목	신청자	개발자	승인번호	승인일
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면화 GHB811×T304-40×GHB119×CO T102×MON88701	한국바스프(주)	BASF Agricultural Solutions Seed US LLC	제2022-1호	2022.2.3.

2. 승인 조건

-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